신진주역세권 B-1BL 우미'린 입주자 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신진주역세권 B-1BL 우미 '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모델하우스(www.lynn.co.kr)와 병행 하여 운영 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은 당사가 정한 시간대별 방문 예약자에 한하여 관람이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당사 홈페이지(www.lynn.co.kr)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외)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 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입장은 당첨자(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외 동반 1인으로 제한됩니다.)

2.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 안내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는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시간을 예약하신 분께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견본주택을 관람하도록 하며, 관람 인원은 예약자 본인 외 동반 1인으로 제한됩니다.
– 사전 예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방문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임을 양지하시고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은 추후 유선상으로 자세한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공지해 드립니다.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하더라도 발열, 기침 등이 있을 경우 강제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3.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출입국사실 증명서 및 여권 확인 예정)(출입국사실증명서에 최근 1개월 내에 출입국 사실이 있는 분은 여권을 지참하여 체류지 확인 필요))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운영(인원, 시간, 방법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모델하우스와 병행 오픈에 따라 고객 상담을 분양 상담전화(055-763-8700)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9.27.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01.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진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영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재당첨 제한기간 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민영주택에는 본 아파트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01)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진주시 1년 이상 거주 신청자(2020.11.01. 이전 계속 거주)가 진주시 1년 미만 거주 신청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진주시 1년 미만 거주 신청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일 정	21년 11월 11일(목)	21년 11월 12일(금)	21년 11월 15일(월)	21년 11월 19일(금)	11월 23일(화) ~ 11월 28일(일)	11월 30일(화) ~ 12월 03일(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후 조회 가능)	10:00~16:00	10:00~16:00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당사 견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신진주역세권 우미린 견본주택 (진주시 충무공동 31-9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21년 11월부터 청약홈의 청약신청 시작시간은 오전 8시에서 9시로 변경될 예정이므로, 청약전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9.2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주택경관과 – 46748호(2021.10.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1986번지 (신진주역세권 B-1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3~25층 13개동 총 82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 446세대(일반[기관추천] 75세대, 다자녀가구 82세대, 신혼부부 151세대, 노부모부양 25세대, 생애최초 11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우선 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민영주택	2021000822	01	084.9860A	84A	84.9860	27.8957	112.8817	69.9937	182.8754	49.4341	464	46	46	92	15	70	269	195	23
		02	084.9888B	84B	84.9888	28.5833	113.5721	69.9959	183.5680	49.7364	294	29	29	59	9	43	169	125	12
		03	116.8943	116	116.8943	36.6771	153.5714	96.2730	249.8444	67.2533	63	0	6	0	1	0	7	56	3
		04	128.8183	128	128.8183	39.5061	168.3244	106.0936	274.4180	73.7141	7	0	1	0	0	0	1	6	3
	합 계										828	75	82	151	25	113	446	382	41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당해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 홍보물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주택형 표시 안내

주 택 형	084.9860A	084.9888B	116.8943	128.8183
약식표기	84A	84B	116	128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주택형(㎡)	층 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1회 22-04-15	2회 22-10-15	3회 23-05-15	4회 23-11-15	입주지정일
084.9860A	기준층	259	154,397,500	297,102,500	–	451,500,000	45,2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135,500,000
	5~9층	115	154,397,500	290,302,500	–	444,700,000	44,5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133,400,000
	4층	23	154,397,500	283,502,500	–	437,900,000	43,8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131,700,000
	3층	23	154,397,500	280,302,500	–	434,700,000	43,5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130,400,000
	2층	23	154,397,500	275,802,500	–	430,200,000	43,1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129,100,000
	1층	21	154,397,500	270,002,500	–	424,400,000	42,5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127,500,000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별도계약품목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급에 관한 사항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자(수분양자)는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대금채권 및 임대수입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구 분	시행사(사업주체)		시공사	비 고
법 인 명	㈜상아건설	㈜강한건설	㈜우미개발	
법인등록번호	200111-0444003	200111-0430672	200111-0042568	
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광주-주택2015-0176	광주-주택2015-0054	광주-주택2000-0004	

※ 시행사 및 시공사의 법인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에게 고지하고 별도 공고는 하지 않음.

분양관련 문의

대표번호	견본주택 위치	홈페이지	비 고
055-763-8700	진주시 충무공동 31-9번지	www.lynn.co.kr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우미'린 견본주택 및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신진주역세권 우미 Lynn

055)763-8700

총 828세대 [전용면적 84 · 116 · 128㎡]

• 시행 : (주)상아건설 외 1 • 시공 : (주)우미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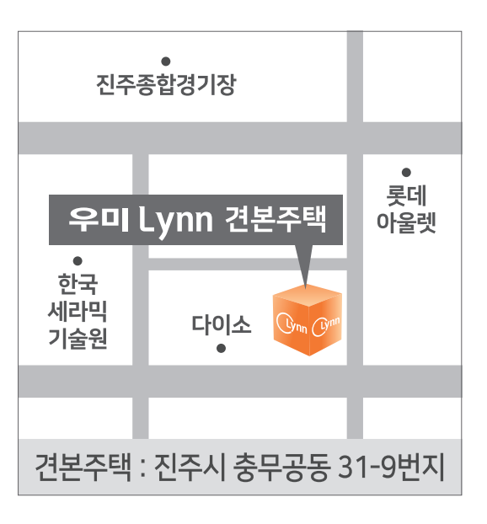

견본주택 : 진주시 충무공동 31-9번지